



제426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주 이내 소집 명시 >
■ 정을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28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주 이내 소집 명시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을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24.

3. 회부연월일 : 2025. 1.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학교의 장이 요청하거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함.

교육부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받으면 학교에서 최대 3주의 사안조사 후 최대 4주 이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함. 그런데 실제로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4주가 넘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하여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사

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제2항).

Ⅲ. 검토의견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4주 이내 소집 명시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의 장,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 또는 보고 받는 등 그 요청·신고·보고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생략)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에</u>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③ ~ ⑥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경우에는 그 요청·신고·보고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u> ----- -----. 1. ~ 6.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제12조¹⁾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징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제13조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 ⑥ (생략)

있는데 원칙적으로 제13조의2²⁾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①심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나 ②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④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이나 ⑤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심의위원회는 해당사안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하게 되므로 심의·의결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것임.

한편, 교육부 지침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³⁾」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 등 학사일정, 사안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 발견, 관련학생 및 보호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7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① 제13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

③ ~ ⑥ (생략)

3) (2024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pp. 72-77 참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의 경우(경찰 수사 진행 중인 사건, 성폭력 사건 등)에는 기한 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행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개최 (7일 이내 연기 가능) • 성희롱 및 성폭력 사안의 경우 관련 전문가 참석이 바람직 • 심의위원회 참석안내서 송부 -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서면 진술도 가능)
↓	
심의 및 의결, 결정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해당 여부, 피해학생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고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 의결에 따라 <u>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조치를 결정</u> •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조치결정 통보(문서)
↓	
피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가해학생 조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측의 의사를 고려하여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할 수 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 교육환경 변경) - 단, 성폭력범죄 피해학생의 전학 요청 시, 학교장은 반드시 교육감(장)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함(「성폭력방지법」 제7조)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을 초과하여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쟁 해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심의 건수 중 4주를 초과하여 심의를 개최한 경우가 22학년도는 38.0%(8,204건)였으나, 23학년도는 40.9%(9,530건)로 증가(1,326건, 2.9%)하였음. 다만, 전체 심의 건수도 21,573건에서 23,319건으로 증가(1,746건, 8.1%)하였고, 4주 이내 처리 건수도 증가(420건)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개최 소요기간】

(단위: 건, %)

구분	4주 이내	4주 초과	계
2022학년도	13,369(62.0%)	8,204(38.0%)	21,573
2023학년도	13,789(59.1%)	9,530(40.9%)	23,319

자료: 교육부

이에 개정안은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심의를 개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신속한 분쟁 해결을 통해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및 가해학생 조치가 개별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고,

사안의 특성(교육지원청 간 공동 학교폭력, 다수학생 관련 사안 등),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회의 행정적·물리적 여건(특정 시기 다수 사안

발생, 학사일정, 관련자 비협조, 업무 담당인력 부족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4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을 방지하여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개정안과 같이 심의위원회 개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의무적으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경우, 충분한 보완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4주 경과 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로 인하여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의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시·도교육청⁴⁾은 4주 이내 심의 개최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폭력 상황을 충분히 조사·검토하고 교육적 해결 및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기계적인 행정처리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4주 경과 후 심의된 사안에 대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한 불복 증가 우려, 학사일정을 고려한 시기 조정을 할 수 없어 학생들에게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 등을 사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4)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0개 시·도교육청의 공통의견으로 신중검토 입장임